

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 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the Company invested from Korea

윤진기**
Jin-Ki Yoon

〈목 차〉

- I. 서론
 - II. 중국 투자기업의 중재기구 선택상의 지위
 - III.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 및 중재절차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 IV. 국내중재판정 집행의 용이성에 대한 검토
 - V. 기타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VI.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중재, 상사중재, 중재위원회, 국내중재, 강제집행, 사법공조, 중국 중재, 중국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경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I . 서론

최근 한중간의 정상외교를 통하여 한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중국진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대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 양국의 무역액도 늘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2년에는 양측 무역총액이 1조 3천억-1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중국에는 38,479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은 27,299개로 전체 투자기업의 70.9%를 차지하고 있다.³⁾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보다는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⁴⁾ 중국의 중재제도는 크게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나뉘어져 있으며,⁵⁾ 그 동안 중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 교역량의 증가로 섭외중재가 우선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반면에 그 동안 국내중재는 중재기구, 중재절차, 중재판정 등에서 섭외중재기구보다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고,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내중재기구보다는 섭외중재기구⁶⁾를 이용하여 분쟁

- 1)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한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2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45.6%나 상승하였다. 한국의 중국 투자금액 28억 달러는 홍콩(438억5천만 달러)과 대만(31억2천만 달러), 싱가포르(30억9천만 달러) 등을 제외하면 (중국에 투자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외국 투자액이다. 그 중요한 요인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 투자액, 7년 만에 일본 넘어서,” 한국경제, 2014-07-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3018428&intype=1>.
- 2) 劉瑞·張后樂, “한-중 수교 30주년 양국 무역 총액 1조 달러 돌파의 조건과 가능성,”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국에서 살아본 중국학자가 보는 한국, 한국고등교육재단, 2012, p.25.
- 3) 대기업은 7,459개, 중소기업은 27,299개, 개인기업은 3,721개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정보공개->통계정보->해외투자통계->통계조회->주투자자규모별 <http://211.171.208.92/odisas.html> (2014.8.5. 검색).
- 4) 전통적으로 중국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중국 내외에서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중재관련 제도가 완전하거나 선호해서가 아니라, 중국내에서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고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그 차선택으로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강대섭·서성호, “중국내 중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재 실무의 관점에서 -,” 안암법학 제44권, 안암법학회, 2014, p.518.
- 5) 중국에서 섭외중재는 중국 영역 내에서 행하는 중재로서 섭외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 대한 중재를 말하며, 국내중재는 중국 영역 내에서 행하는 중재 중에서 섭외적 요소가 없는 중재를 말한다. 중국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에서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중재기구의 경우에는 ‘仲裁机构’를, 섭외중재기구의 경우에는 ‘涉外仲裁机构’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 6) 섭외중재기구는 중국 중재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중국국제상회에서 설립한 중재위원회를 말하며, 국내중재기구로 통칭되는, 중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국 국내의 일반 중재위원회와 구분된다. 섭외중재기구는 같은 법 제 65조에 의하여 섭외 경제무역, 운송 및 해사 중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였으나, 나중에는 섭외사건이 아닌 국내 일반 사건도 관할범위에 포함시켰다. 섭외중재판정은 섭외적 요소를 가진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인데, 무엇이 섭외적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992년에 통과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若干問題的意見」 十八、涉外民事訴訟程序的特別規定 304에 따라 결

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의 거래는 분쟁이 잦을 수 있고, 또 분쟁금액이 중소규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고비용의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만약 중국의 국내중재기구가, 절차나 판정의 공정성, 판정집행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섭외중재기구보다 가까이 있는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장차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분석하고, 국내중재기구를 한국 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들이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섭외중재기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이미 상당수의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II. 중국 투자기업의 중재기구 선택상의 지위

1. 문제의 소재

현재 중국의 중재 당사자는 내국당사자와 섭외당사자로 나눌 수 있으며,⁷⁾ 이러한 지위의 차이에 따라 중재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현지에서 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국 국내기업에 해당되고(비록 외자기업이라 통칭되더라도), 만약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를 하게 되면, 중재의 내국당사자가 된다. 만약 상대방과 맺은 계약의 내용에 섭외성이 인정 된다면 섭외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정될 것이다. 그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거나, 당사자 간의 민사 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종료의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했거나, 소송물이 외국에 있는 민사사건은 섭외민사사건이 된다.(304. 當事人一方或双方是外國人、無國籍人、外國企業或組織, 或者當事人之間民事法律關係的設立、變更、終止的法律事實發生在外國, 或者訴訟標的物在外國的民事案件, 爲涉外民事案件。) 초기에는 섭외중재기구는 섭외사건만 수리하였으므로 그것이 내린 중재판정을 모두 섭외중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섭외중재기구도 국내 일반사건을 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섭외성을 가진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만 섭외중재판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내에서 국내중재기구 또는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정 중에서 섭외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중재판정은 모두 내국중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과 서로 구분된다.

7) 중국 내의 중재 당사자 중에서 분쟁에 섭외적 요소를 가진 당사자는 섭외당사자이며, 그렇지 않은 당사자는 내국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내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기업의 경우에 국내중재기구에서 중재하는 것은 무방하나涉外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외국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실무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외국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2. 내국당사자의涉外중재기구 선택문제

중국 중재법⁸⁾에 의하면, 국내중재기구와涉外중재기구의 관할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 기관 간의 관할권 문제가 존재하였는데, 국무원에서 1996년 국내의 중재위원회도涉外사건을 수리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발하여,⁹⁾ 국내중재기구도 ‘涉外중재’ 사건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후 중국은 1998년 4월 29일 CIE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涉外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분쟁은 (중국 국내기업이지만)涉外중재기구에서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¹⁰⁾ 그 후 2000년 9월에 CIETAC이 국내의 모든 분쟁을涉外중재기구가 수리할 수 있도록 중재규칙을 개정하여,¹¹⁾ 국내의 모든 분쟁을涉外중재기구에서 중재할 수 있게 되었다.

3. 내국당사자의 외국중재기구 선택문제

중재의 양 당사자가 내국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면 사적자치의 당연한 결과로서 외국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다. 그러나 중국에서 내국당사자가 외국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실무가 존재한다. 내국당사자의 지위에서 외국중재기구를 중재기구로 약정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중국 법원은 법률상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중재합의가

8) 중국은 중재법을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시켜 같은 날 공포하여 제정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실시해 왔다.

9) 國務院辦公廳關於貫徹實施〈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需要明確的幾個問題的通知, 國務院辦公室發(1996.6.8.)22號, 제3조 참조.

10) 1998년 CIETAC 중재규칙 제2조 참조.

11) 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3, p.266. 그 후 2005년 중국국제상회는 CIETAC 중재규칙 개정 시에 사건관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국내분쟁으로 인한 중재사건’을 관할 범위에 포함시켜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涉外중재기구가涉外중재사건 외에도 국내사건 및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사건을 수리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윤진기,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p.107.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¹²⁾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법원(上海浦東新區人民法院)이 2009년 섭외적 요소가 없는 내국당사자가 중재합의에서 외국의 중재기구를 선택하여 중재를 진행한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한바 있다. 이 사례는 건설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중국의 내자기업이고 계약 이행지 및 공사의 소재지 역시 중국 경내에 위치하여 주체, 객체, 계약의 내용에서 모두 섭외적 요소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SIAC의 중재로 해결하자는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제소하자 피고는 중재합의를 이유로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상해시 법원은 내국당사자는 외국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¹³⁾

이 사안의 쟁점은 내국당사자가 내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기구로 외국중재기구를 약정한 것이 유효한 중재합의인가의 여부에 있었다. 상해시 법원은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섭외경제활동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만 중재기구로 외국중재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당사자가 섭외적 요소가 없는 분쟁의 중재를 외국중재기구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국분쟁의 중재를 외국중재기구에 신청하는 것은 중국의 입법과 주권관할에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을 지지하였다.¹⁴⁾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법규정의 부존재가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중국의 내국당사자가 내국분쟁을 외국중재기구에서 중재로 해결하도록 약정한 중재합의는 유효하고, 이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¹⁵⁾ 실제로 당장 중재를 신청해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내국분쟁을 외국중재기구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은 중재기구를 선택할 때 위와 같은 중국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섭외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내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외에, 중국의 내국 당사자가 중국 내에 있는 외국중재기구를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009년 4월 영파(宁波) 중급인민법원은 국제상회 ICC 국제중재원의 중재판정부가 북경에서 ICC중재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한 중재판정은 비국내판정에 해당하고 당연히 법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중국법원이 처음으로 외국중재기구가 중국 내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집행한 것이다.¹⁶⁾ 이 결정이 나온 후에 중

12) 신지연·이정표, “중국 중재당사자의 외국중재기관 선택에 관한 법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2014, p.430.

13) 위의 논문, pp.424-425.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평석은 위의 논문, p.424 이하 참조.

14) 위의 논문, p.425.

15) 위의 논문, p.430.

16) “宁波法院裁定承認和執行ICC在北京作出的仲裁裁,” 110 法律諮詢網 首頁 > 經濟仲裁 > 經濟仲裁動態 >

국에서는 이 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04년 3월 ICC 중재판정부는 ICC 중재규칙에 따라 상해에서 중재판정을 내린바 있으며, 이 중재판정은 무석시(無錫市) 중급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이 신청되었다. 2년의 심리 끝에 2006년 7월 당해 ICC 중재판정의 근거가 된 중재계약이 중국법에 의하면 무효라는 이유로 집행이 거부되었다.¹⁷⁾

외국중재기구가 자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국에서 실제로 중재를 하거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중국을 법률상 중재지로 삼는 경우에 관하여는 중국법에 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당사자가 외국의 중재기구를 선택하면서 중국을 중재지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 외국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정은 중국의 현행 법상 이를 국내중재(섭외중재)로 식별하지 못하고 외국중재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은 위 상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ICC 사무국의 날인 확인을 받은 것이므로 비국내판정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하였다.¹⁸⁾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한 연구자는 “이 외국중재의 중재지는 중국이기 때문에 뉴욕협약이 정한 외국중재라는 기준에 의할 수는 없다. 뉴욕협약에서 정한 비국내판정이 위와 같은 판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¹⁹⁾ 위와 같은 판정은 중국 국내법에 의하지도 못하고 뉴욕협약에 의하지도 못하여 결국 이러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규율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문제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²⁰⁾

중국의 경우에, ICC와 같은 외국중재기구가 중국 내에서 행하는 중재는 국제서비스 무역에 속하며, 중국은 외국중재기구가 중국 내에서 국제상사중재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양허하지 않은 점과 중국의 국내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중재기구는 중국 내에서 국제상사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바,²¹⁾ 이러한 주장은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2009년 4월 영파(寧波) 중급인민법원의 결정에

www.110.com 2010-07-21 14:48(2014.11.8. 검색)

http://www.110.com/falv/jingjizhongcai/jjzcdongtai/2010/0721/151595.html

17) 이 사건의 계약은 FIDIC표준계약 본문을 채택하고, 계약 부속서에 “Arbitration: 15.3 ICC Rules, Shanghai shall apply.” 라는 조항을 두었다. 이 사건의 상세한 검토에 대해서는 趙秀文, “從旭普林公司案看我國法院對國際商事仲裁的監督,” 2010-2-6 15:36:16(2014.11.8. 검색)http://www.qiqi8.cn/article/1/10/2010/20100206118722.html

18) 위의 자료.

19) 뉴욕협약은 비국내판정에도 적용된다.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mad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uch awards are sought, and arising out of differences between persons, whether physical or legal. It shall also apply to arbitral awards not considered as domestic awards in the State where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sought. - New York Convention, Article I.1) 그러나 비국내판정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고, 중국 내에서 외국중재기관이 중재한 판정이 비국내판정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서 상세한 논의는 蘇曉凌,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3, p.497 이하 참조.

20) 위의 논문, p.504.

21) 李健, “外國仲裁机构在中國內地仲裁不可行,” 法律快車 > 法律知識 > 仲裁法 > 仲裁論文 > 正文, 2010-12-23(2014.11.8. 검색) http://www.lawtime.cn/info/zhongcai/zclw/2010122347461.html

도 불구하고 이후 동일한 유형의 중재판정은 중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 중 분쟁 금액이 매우 커서 특히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는 경우나 FIDIC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한국의 건설 분야 진출기업은 중국 내에서 ICC와 같은 중재기구를 통하여 중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재계약에 그러한 취지의 중재조항을 삽입하면 그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중재판정 또한 중국에서 집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 섭외당사자의 외국중재기구 선택문제

섭외당사자가 외국중재기구를 선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 경우에 유효성의 근거를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서 구하지 않고, 「계약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기초로 섭외적 요소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하며, 섭외성이 인정될 경우에 분쟁당사자가 중재기구로 외국중재기구를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²²⁾

실제 사례에 있어서, 섭외적 요소의 존재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001년 12월 20일 리푸사탕유한회사(利夫糖果有限公司)와 상하이엔푸식품유한회사(上海聯富食品有限公司) 사안에서, 이 두 회사와 말레이시아 국적의 제3자인 황한광(黃漢光)은 사탕회사의 자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자산매매합의」(資產購買協議)를 체결하였고, 식품회사는 황한광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행한 주체이다. 사탕회사는 네덜란드의 CSM기업이 상해에 설립한 외상독자기업이고 식품회사는 중국 자연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즉 내자기업에 해당한다.

합의에서 중재조항은 중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분쟁발생시 중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분쟁발생시 중재기구로 SIAC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였다. 이후 사탕회사와 식품회사 사이에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사탕회사와 CSM회사는 황한광과 식품회사를 상대로 자산매매대금 및 기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2006년 4월 25일 SIAC에 신청하였다.²³⁾ 그 후 SIAC에서는 사탕회사에게 승소판정을 내렸고, 사탕회사는 상해시 2급 중급인민법원에 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단계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의 섭외성 판단여부였으며, 피신청인은 중국 내자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이고 그로부터 파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섭

22) 신지연·이정표, 앞의 논문, p.429 참조.

23) 자세한 것은 위의 논문, 426-427면 참조; 催學杰·何云, “案例評析: 論對涉及違反管理性強制性規範的合同所作的外國仲裁裁決的承認和執行-利夫糖果(上海)有限公司申請承認和執行新加坡國際仲裁中心仲裁裁決案評析,”北京仲裁 第72輯, 2010, 152頁.

외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황한광으로 인해 주체에 섭외적 요소가 인정되므로 해당 합의에는 섭외성이 있고, 이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판정은 섭외중재이라는 이유로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을 받아들였다.²⁴⁾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은 중국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섭외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국중재기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은 법률적으로 중국의 내국기업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섭외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한 내국분쟁에 해당하고, 중재기구의 선택에 있어서는 국내중재기구나 섭외중재기구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SIAC과 같은 외국의 중재기구, 또는 중국 내의 ICC와 같은 국제중재기구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은 중재기구를 선택할 때 위와 같은 중국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섭외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내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분쟁의 가액이나 상황이 섭외중재기구를 선택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중재기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Ⅲ.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 및 중재절차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1.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현재 중국에는 매우 많은 중재기구가 있다. 중국 중재법 제10조²⁵⁾에 따라, 중국에는 각 지역별로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수는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이르러서는 160개로 늘어났고,²⁶⁾ 2005년 말까지 중국에는 185개의 국내중재기구가 설립되었으며,²⁷⁾

24) 자세한 것은 신지연·이정표, 앞의 논문, pp.426-427 참조.

25) 중국 중재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第十條 仲裁委員會可以在直轄市和省、自治區人民政府所在地的市設立, 也可以根據需要在其他設區的市設立, 不按行政區劃層層設立。 仲裁委員會由前款規定的市的人民政府組織有關部門和商會統一組建。 設立仲裁委員會, 應當經省、自治區、直轄市的司法行政部門登記。

26) 오원석·김태경, “중국상사중재의 사법감독 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p.94.

27) 張小建, “中國仲裁協會基本問題研究——兼論我國《仲裁法》有關條款的修改,” 仲裁研究 第8輯, 2006, 41頁. 2006

2009년 말 CIETAC과 CMAC(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중국해사중재위원회)를 합쳐 전국의 중재위원회는 모두 202개나 되고 있다.²⁸⁾

중재기구의 독립성은 중국의 국내중재의 공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중재기구가 독립성을 유지하여 그곳으로부터 공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만 한다. 만약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통하여 중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재판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국내중재기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중재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행정기관과 아무런 예속관계가 없고, 중재위원회 상호간에도 아무런 예속관계가 없다.²⁹⁾ 중재기구의 민간성과 독립성은 중재권한의 정상적인 행사를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상의 보장을 제공하며, 중재판정부가 법률이 수권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중재권한을 행사하게 한다.³⁰⁾ 그러나 중국 지방 중재위원회는 민간성보다는 행정성 조직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지방 중재기구가 설립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나타났다. 초기에 중국에서 많은 성시에서는 기한을 정하여 중재기구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조직된 분만족진아(催生兒)들은 많은 경우에 가사상태에 처해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중재의 명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³¹⁾ 또 급속하게 행정기관의 주도로 설립된 지방 중재위원회는 많은 지역에서 중재기구의 행정화 색채가 농후해서, 행정이 중재에 간섭하는 문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중재의 민간성은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³²⁾

년 말까지 185개로 기재하고 있는 논문도 있다. 周江, “也談仲裁機構的民間性,” 北京仲裁 第62輯, 2007, 80頁. 2006년 전국 중재기구의 수와 안전수리 상황에 대해서는 ‘2006年全國各仲裁委員會受理案件情況’ <http://www.china-arbitration.com/news.php?id=415> (2014.8.7. 최종방문) 참조. 2005년 중국의 지방중재기구 현황에 대해서는 劉武俊, “中國仲裁制度的實証研究——中國仲裁制度的現狀分析及完善對策,” 鄭州經濟管理干部學院學報 第22卷 第1期, 2007, 42頁 참조. 기타 중국 초기 지방중재기구의 상황에 대해서는 于洋·田知密, “論仲裁制度的特點及其在中國的發展,” 社科縱橫 第22卷 第9期, 2007, 91頁 참조. 광둥성 지방중재기구 및 광저우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차경자·최성일, “중국 광저우(廣州)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3, p.217 참조.

28) 오원석·김태경, 앞의 논문, p.94.

29) 중국 중재법 第十四條: 仲裁委員會獨立于行政機關, 與行政機關沒有隸屬關係, 仲裁委員會之間也沒有隸屬關係.

30) 羅楚湘, “仲裁行政化及其克服,” 江西社會科學 2012년 第3期, 2012, 149頁.

31) 張小建, 앞의 논문, p.43.

32) 劉武俊, 앞의 논문, p.45. 張艾清, “我國商事仲裁制度去‘行政化’研究,” 當代法學論壇, 2011年 第4輯, 2011, 39

어떤 중재위원회는 설립한 날부터 바로 관방기구로 되었으며, 정식 현급(縣級)으로 격을 정하고, 정 직원 1인 부 직원 2 내지 3인을 두었으며, 간부를 배치하는 기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중재위원회의 주임을 겸임하고 사건을 심사 비준하기도 한다.³³⁾ 북경중재위원회가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80여개 중재기구를 대상으로 중재기구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기관의 장이 중재기구의 사무책임자를 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재기구 구성원 중에 당정의 기관 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수의 중재기구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³⁴⁾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당시 당정기관의 영도자가 중재위원회의 구성원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재기구가 상당수에 이르렀으며, 어떤 중재위원회 주임은 지방행정 수장이 겸임하고, ‘정부업무회의’ 구성원이 상당수가 중재위원회 위원이 되어, 중재기구가 ‘제2의 정부’(二政府)가 되게 하였다고 하는 지적까지 있다.³⁵⁾

중재기구에 당정영도자가 과도하게 많은 현상은 중재법의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중재기구의 민간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중재기구의 민간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고, 중재기구가 지방보호주의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하고, 나아가 당해 중재기구의 선택을 포기할 수 있다.³⁶⁾

그 동안 영문으로 발표된 중국 중재제도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2010년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지방 중재위원회는 재정운용상, 인원 편제, 심지어 사건의뢰 분야에 있어서 지방 정부에 의지하고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기구의 전문화 및 독립성의 특징이 결여되어 있고, 이것은 중재위원회의 개혁이 지방행정화 영향을 심각하게 받게 하며, 지방 중재위원회의 개혁도상에 곤란이 겹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³⁷⁾

한국의 다른 연구자들도 중국의 중재기구가 태생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중재기구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보조나 사무시설 등이 제공된다면 특정사건에서 정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⁸⁾

중국에서는 국내 중재기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예컨대, 행정기관 책임자의 중재기구 영도자 겸직 금지,³⁹⁾ 중재기구의 민간화 작

頁도 중재의 행정화 추세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3) 張小建, 앞의 논문, p.43.

34) 오원석·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지, 2014, p.168.

35) 周江, 앞의 논문, p.83.

36) 위의 논문.

37) 顧維遐, “我們信賴仲裁嗎? ——關於中國仲裁研究的英文文獻綜述,” 北京仲裁 第72輯, 2010, 10頁.

38)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23.

39) 혹자는 중재위원회의 법인대표와 중재위원회 비서장은 반드시 임직 조건을 구비한 전문직 인원이 담당하도록

업,40) 또는 중재협회의 설립을 통한 해결방안41)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아직 중재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중재협회는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42) 아래에서 검토하는 이유 때문에 제기된 다른 방안들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 중재위원회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북쪽 지역에서는 주로 정부의 행정기관과 동급의 형태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중재기구의 간부는 당의 조직부서에서 임명한다. 남쪽 지역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사업단위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부의 임명과 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기타 인원에 대한 급여는 각 중재기구의 수입에서 충당하는 형태이다. 항주중재위원회의 경우에는 절강성 항주시 법제판공실의 연계단위(이것은 정부에 의한 조직으로서 주관부문의 형태가 아니라는 뜻이지만 필자가 보기로는 법제판공실의 한 부문으로 운영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로 운영되고 있다.43)

앞에서 여러 중국의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반대로, 필자가 방문한 한 국내중재위원회 관계자들은 중재인의 민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해 중재위원회 실무자들은 주로 정부의 행정기관과 동급의 형태로 조직 운영되며 중재기구의 간부를 당의 조직부서에서 임명하든, 중재위원회가 사업단위형식으로 운영되고 간부의 임명과 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며 기타 인원에 대한 급여는 각 중재기구의 수입에서 충당하는 형태이든, 어느 경우에도 중재인은 민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44) 그러나 중재기구가

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동시에 또 행정기관 책임자는 중재기구에서 영도자의 직무를 겸임하지 못하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하며, 오로지 이렇게 해야만 중재기구의 민간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고, 중재기구와 행정기관의 관계를 바로잡고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아울러 정부의 중재에 대한 ‘서비스, 감독’ 관계를 ‘영도, 예속’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周江, 앞의 논문, p.83.

40) 또 혹자는 “정부의 중재업무에 대한 가장 큰 지지는 곧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중재기구의 민간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철저히 행정기관의 중재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중재의 민간성을 회복하고, 중재기구의 독립성과 중재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건의하고, 다시는 정부가 나서서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정부가 중재기구에 경비와 물질 방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정부의 어떤 간부가 나서서 중재업무를 집중 관리하고 지도하지 않고, 아울러 정부가 문건을 내려 중재제도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속히 중재협회를 설립하여 중재에 대한 업무 관리를 실행하여 시장에 들어가서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劉武俊, 앞의 논문, p.45.

41) 중국 중재법 제15조에 의하면, 중국은 중재협회를 결성하여야 하며, 중재협회만 (정식) 중재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동안 중재협회가 설립되지 않아서 많은 중재기구가 중재법 제75조(第七十五條 中國仲裁協會制定仲裁規則前, 仲裁委員會依照本法和民事訴訟法的有關規定可以制定仲裁暫行規則。)에 따라 임시(잠정)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시(잠정) 중재규칙을 정식 중재규칙으로 승격시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중재법」의 규정과 일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羅楚湘, 앞의 논문, p.151. 중재협회의 민간성은 중재의 민간적 속성의 근본적인 요구이며, 張小建, 앞의 논문, p.44. 따라서 중국 중재협회를 설립하여 (현재 사실상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행사하는 감독권을 중재협회에서 이어받아) 중재기구 업무 감독자의 신분으로써 현지의 정부에 중재기구를 규율하는 운용방식에 대하여 중재기구의 민간성을 보장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의 논문, p.43 참조.

42) 2014.1.13. 항주중재위원회 방문 면담조사.

43) 2014.1.13. 항주중재위원회 방문 면담조사. 그러나 이 내용은 면담을 통하여 얻은 것이므로 정확하게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 지방중재위원회의 현황을 다소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4) 2014.1.13. 항주중재위원회 방문 면담조사.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중재인의 민간성이 유지되고 있어도 중국 정치 경제체제의 특성상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비독립적인 중재기구가 민간인인 중재인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는 독립성과 민간성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행정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 중재제도의 행정적 성격은 역사적 원인도 존재하며,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한 정치체제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⁴⁵⁾ 이러한 특수성과 위와 같은 중재위원회 실무자들의 현재의 인식을 고려할 때 학자들의 민간성 결여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중재위원회의 행정적 성격이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국 국내중재기구는 여전히 독립성과 민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고, 따라서 중재판정의 공정성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의 중국진출 기업들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통하여 공정한 중재판정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며, 최소한의 공정한 중재판정을 얻기 위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국내중재기구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절차상 중재기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재인을 최소화하여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면 국내중재기구를 통하여 중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절차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이를 이용한 공정성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는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공정한 판정을 얻기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재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전히 국내중재기구가 분쟁해결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의 국내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결여와 이로 인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고, 또 중재 전 재산보전 조치가 허용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왔다.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이러한 절차상의 비합리성은 최근 중국의 국내중재기구의 중재규칙 개정을 통하여 많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국내중재기구의 당사자 자치, 중재인 선정, 및 재산

45) 張艾清, 앞의 논문, p.44.

보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절차상의 합리성 여부 및 이를 이용한 공정한 중재판정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만,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편의상 선별한 6개의 국내중재기구⁴⁶⁾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2) 당사자 자치 및 중재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한 검토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국내중재기구에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왔으나, 현재는 이 중재규칙 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사항 또는 중재에 적용할 규칙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중재기구는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중재위원회이고,⁴⁷⁾ 청도중재위원회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광주, 항주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규칙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절차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다.⁴⁸⁾ 다른 절차규정이나 중재규칙을 허용한다는 것은 당사자 자치에 대한 당해 중재기구의 입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당해 중재위원회의 개방성이나 보수성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기구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경우에 중재계약의 유효요건은 종래 다소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다. 현재는 이에 대한 태도가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항주와 청도중재위원회는 중재계약에 당해 중재위원회를 선정한다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⁴⁹⁾ 청도 및 항주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위원회 선정 의사표시 외에도 중재신청의 의사표시와 중재사항이 반드시 중재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중재계약은 무효가 되어 중재신청을 수리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은 중재합의가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합의 중에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나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가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하였으나 중재기구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광주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도록 인정하였다.⁵⁰⁾ 북경,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도

46) 이 부분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6개의 국내중재기구는 편의상 선정한 것이나, 한국투자기업이 내수시장 진출에서 분쟁해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북경중재위원회는 대표적인 국내중재기구이고, 청도중재위원회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의 중재위원회이며, 서안중재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7개의 시험 중재기구 중의 하나이며, 중경, 항주, 광주중재위원회도 향후 한국투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곳이다.

47)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조;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중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5조.

48)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5조. 다만 항주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은 중재절차에 대한 별도의 약정만을 명시하고 있어서 해석상 중재규칙에 대한 약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9)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7조; 청도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⁵¹⁾

이와 같이, 일부 국내중재기구에서 당사자 자치가 보장되고, 중재계약의 유효성의 요건이 완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다른 중재규칙 선택 등 당사자 자치가 보장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중재인명부 및 중재인 선정에 관한 검토

1) 중재인명부의 강제와 중재판정의 공정성 확보

중국 진출 한국투자기업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중재인의 편향성으로 인한 판정의 불공정 문제이다. 만약 중재인명부의 강제가 중재기구에서 한국인 중재인을 중재인으로 1명도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중국 당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중국의 중재인들이 개별적인 도덕성과 전문 능력 분야에 있어서 외국의 타 중재인들과 비교해 볼 때도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중재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⁵²⁾ 그러나 중국의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이 다른 외국의 중재기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인 중재인이 1명이라도 중재에 참가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다.⁵³⁾

북경, 중경, 청도중재위원회는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⁵⁴⁾ 항주중재위원회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정은 없으나 동일하게 해석 할 수 있다.⁵⁵⁾ 이와 같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는 중재기구에서는 중재인명부에 한국인 중재전문가가 중재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투자기업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에서 한국인 중재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중재기구의 중재인명부에 한국인 중재인을 5명이상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수의

50)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0조.

51)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조;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8조.

52)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21.

53) 현재 중국인 중재인들의 소질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인 중재인들에게 중재를 받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중재기구 자체가 행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중재인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간에 의견이 다르고,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사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보기에 따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 중재인들이 중국 편파적인 판정을 해도 나름 법적인 이유를 달 수 있다. 특히 중재는 단심제이다. 1회 판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상소가 불가능하다. 이 점이 재판과 다른 점이며, 공정성이 담보될 경우에는 돈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는 것이지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 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에 한국인 중재인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4)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7조; 중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7조; 청도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9조.

55)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한국인이 중재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만약 기피사유에 해당된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변호사가 중재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 투자한 한국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인 기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9조⁵⁶⁾에 중재인 회피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 측이 우호적인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부탁을 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회피사유를 들고 나와 중재인을 바꾸도록 요구한다면 중재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바꾸어야만 하고⁵⁷⁾,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판정을 받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중재인 기피사유는 다양하지만,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의하면 한국회사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한 변호사는 기피사유에 해당된다.⁵⁸⁾ 만약 이렇게 되면 여분의 우호적 중재인이 사전에 중재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중국의 중재인을 선임하여 불공정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중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각 중재인들에게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선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5명 정도 되어야 어떤 경우에도 우호적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위촉하는 것이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변호사들이 중국 국내중재기구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의 중재규칙은 중재인이 본안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사이에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의 독립성,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지(披露)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일부 국내 중재위원회는 기피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중재인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본안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기타의 관계가 있어서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

56)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9조는 다음과 같다: 第二十九條 仲裁員有下列情形之一的, 必須回避, 當事人也有權提出回避申請:

- (一) 是本案當事人或者當事人、代理人的近親屬;
- (二) 與本案有利害關係;
- (三) 與本案當事人、代理人有其他關係, 可能影響公正仲裁的;
- (四) 私自會見當事人、代理人, 或者接受當事人、代理人請客送禮的。

前款(三)中“其他關係”系指:

- 1、對於承辦的案件事先提供過諮詢的;
- 2、現任當事人的法律顧問或代理人, 或者曾任當事人的法律顧問且離任不滿兩年的;
- 3、與當事人或其代理人在同一單位工作, 或者曾在同一單位工作且離開不滿兩年的;
- 4、為本案當事人推薦、介紹代理人;
- 5、擔任過本案或與本案有關連的案件的証人、鑒定人、勘驗人、辯護人、訴訟代理人的。

57)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第三十二條 仲裁員因回避或其他原因不能履行仲裁員職責的, 如果該仲裁員為當事人所選定, 當事人應當自收到仲裁委員會通知之日起五日內(有境外當事人的為十日)重新選定仲裁員, 逾期未選定的, 由仲裁委員會主任指定; 如果該仲裁員為仲裁委員會主任代為指定的, 仲裁委員會主任應當另行指定仲裁員, 並將重新指定仲裁員的情況及時通知當事人。

58)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9조.

59) 중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4조;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5조;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9조.

우에는 당연히 기피사유가 되며, 여기서 ‘기타의 관계’에는 당사자를 위하여 사전에 자문을 제공한 경우, 현재 당사자의 법률고문 또는 기타의 고문을 맡고 있거나, 이전에 당사자의 법률고문 또는 기타의 고문을 맡은 적이 있고, 그 고문관계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전에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은 사건이 종결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지의 한국인 변호사들은 그들이 중재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한국기업의 중재인을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한국인 변호사들이 동일한 중재기구의 중재인명부에 중재인으로 등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변호사가 기피되더라도 다른 한국인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재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한국인 중재전문가들이 중재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안중재위원회의 중재인명부에는 한국인은 1명도 없다. 반면에 대만인은 9명이나 있다.⁶⁰⁾ 중경중재위원회의 중재인명부에도 한국인은 1명도 없다.⁶¹⁾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인명부에는 4명의 한국인이 등록되어 있다.⁶²⁾

중재의 좋고 나쁨은 중재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중재인명부에 누가 등재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중국의 각종 중재기구도 보편적으로 중재인의 관리를 비교적 중요시 한다.⁶³⁾ 중재인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재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관리의 강화와 동시에 어떻게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중재인 명단에 가입시키는가 하는 것은 각종 중재기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⁶⁴⁾

중재인에 관한 현재 중재기구들의 실무를 보면, 인원 수적 면에서 충분하고도 능력 있는 중재인들의 확보라는 측면만 강조될 뿐 중재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등 중재인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다.⁶⁵⁾ 특히 개별 중재인들이 이전에 참여한 중재사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공해 준다면 사건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 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중재 실무에서도 이익충돌이나 이해관계의 존재를 이유로 중재인들이나 중재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임의 회피 또는 기피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나,⁶⁶⁾ 중국의 국내중재 현실에서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60) <http://www.xaac.org/> (2014.11.12.검색)

61) <http://www.cqac.org.cn/> (2014.11.12.검색)

62) <http://www.bjac.org.cn/> (2014.11.12.검색). 참고로 上海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上海國際仲裁中心 : SHIAC)에는 5명의 한국인중재인이 등록되어 있다.(2014.11.12.검색).

63) 宋連斌, “《仲裁法》實施后中國仲裁制度的新發展,” 北京仲裁 第73輯, 2010.11, 38頁.

64) 위의 논문, p.38.

65)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24.

66) 위의 논문.

한국투자기업이 관련된 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내 당사자 자치를 비교적 잘 보장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즉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의 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중재학회와 MOU를 체결하여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의 법률가나 중재전문가를 이러한 중국의 국내중재기구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⁷⁾ 만약 MOU를 통하여 5인 이상의 한국인 중재인을 중재인명부에 등재하게 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를 통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공정한 중재판정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한중 관계기구 간에 MOU를 체결하여 한국투자기업이 당해 중재위원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면 중국의 국내중재위원회는 중재비용의 수취가 중요한 수익모델이기 때문에 만약 중재건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한국인 중재인을 초빙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만약 한국중재인을 초빙한 후에 사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실용적이며 매우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국내중재기구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건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소수의 사건을 위해서 중재위원회에서 기꺼이 협정에 임할 것인지가 문제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국내중재기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전에 이미 중국의 다른 곳, 예컨대 대련 같은 곳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추천한 한국인 중재인을 대련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위촉한바 있는데 대련 같은 곳은 한국중재인만 등록되어 있고, 한국투자기업의 대련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MOU체결이 없어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않았다.

2) 중재인명부 외의 중재인 선정 가능성과 중재판정의 공정성 확보

서안중재위원회의 경우 유일하게(검토한 6개의 국내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중에서) 중재인명부 외에서도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즉 서안중재위원회가 제공하는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안중재위원회 주임의 심사 선정을 거쳐야 한다.⁶⁸⁾ 따라서 당사자가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약정을 한 후에 서안중재위원회 주임의 심사를 받으면 중립적인 중재인 선임이 가능하다. 다만 서안중재위원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인을 중재인명부 외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국의 중재실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것은 당해 중재위원회가 매우 개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

67) 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필자가 2013년 항주에 체류하는 동안 항주중재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이다.

68)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1조 제1항. 제2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第二十一條【仲裁員的確定】本會向當事人提供仲裁員名冊, 由當事人從中選定仲裁員。當事人約定在仲裁員名冊以外選定仲裁員的, 須經本會主任審定。

내고 있다. 국내중재기구로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북경중재위원회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서안중재위원회가 이와 같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서안중재위원회 중재 규칙에 의하면 한국투자기업이 한국인 중재인을 중재인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로펌이 다수 있기 때문에 중재인기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장중재인이 중국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서 결국 중국인 중재인 2명과 한국인 중재인 1명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중국인 중재인의 비율이 높지만, 중재인 3명이 모두 중국인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보다는 외견상 더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의장중재인을 제3국의 중재인으로 할 수 있다면 중재판정의 공정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4) 의장중재인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1) 의장중재인 선정의 문제점

중국에서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에는 공정한 중재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재인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특히 의장중재인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장중재인은 중재사건의 전체적인 진행이나 중재절차 내 의견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에서 중재위원회에서 의장중재인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⁶⁹⁾

중국 중재법에 의하면, 의장중재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인에게 위임하여 지정한다.⁷⁰⁾ 그러나 중재가 제기된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의 경우 이미 악화된 감정 때문에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주임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중재판정 시 다수 의견을 결론으로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중재인의 의견이 중재판정으로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중재위원회의 의도대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3의 중재인은 이미 선정된 중재인이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⁷¹⁾

중국의 일부 국내중재위원회는 의장중재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장중재인 선정 방법을 중재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북경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

69)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24.

70) 중국 중재법 제31조 제1항.

71) 윤진기, 앞의 논문(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p.110; 윤진기, “UNCITRAL 모델중재법과 중국 중재법의 비교,” 경남법학 제14권,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2, p.114.

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의장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양 당사자는 위의 기간 내에 각자가 1명 내지 3명의 의장중재인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중재위원회는 5명 내지 7명의 의장중재인 후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중에서 1명 내지 3명의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의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각자가 선정한 후보명단 중, 또는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명단 중 각자가 선정한 명단에 중복되는 중재인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한다. 중복되는 중재인이 1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의장중재인으로 한다. 각자가 선정한 후보명단 중 또는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명단 중에서 각자가 선정한 명단에 중복되는 중재인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후보명단 또는 선정명단 외에서 의장중재인을 지정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 당사자가 의장중재인을 공동으로 선정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다.⁷²⁾

서안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제21조⁷³⁾나 중경중재위원회원의 중재규칙 31조⁷⁴⁾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많으나 결국은 양 당사자가 중재인명부 중에서 또는 중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 중에서 몇 명을 지정하고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하고 중복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서 의장중재인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북경중재위원회의 경우에는 5명 내지 7명의 후보 중에서 1명 내지 3명의 후보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중복 지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서안중재위원회나 중경중재위

72)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73)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1조 제3항 및 제4항. 제21조는 다음과 같다: 第二十一條【仲裁員的確定】本會向當事人提供仲裁員名冊,由當事人從中選定仲裁員。當事人約定在仲裁員名冊以外選定仲裁員的,須經本會主任審定。

由三名仲裁員組成仲裁庭的,當事人應當各自選定或者各自委托本會主任指定一名仲裁員,第三名仲裁員為首席仲裁員。

首席仲裁員按照下列方式之一產生:

(一) 由雙方當事人共同選定;
 (二) 由雙方當事人書面委托各自選定的仲裁員共同選定;
 (三) 由雙方當事人各自推薦一至五名仲裁員作為首席仲裁員人選。推薦名單中有一名相同的,為雙方當事人共同選定的首席仲裁員;有一名以上相同的,或者沒有相同人選的,由本會主任指定。
 (四) 由雙方當事人共同委托本會主任指定;

當事人或者其委托的仲裁員未能共同選定首席仲裁員的,由本會主任指定。

74) 중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1조. 제31조는 다음과 같다: 第三十一條 首席仲裁員按下列方式產生:

(一) 由雙方當事人在規定的期限內共同選定或者共同委托本會主任指定;
 (二) 雙方當事人在仲裁員名冊中各自選擇一至十名仲裁員,以雙方選定的相同的一名仲裁員擔任首席仲裁員;若雙方選定相同仲裁員在一名以上的,由雙方選定書中最先相同的一名擔任首席仲裁員;
 (三) 雙方當事人選定的仲裁員中沒有相同的,由本會主任指定,但本會主任指定的仲裁員不能在雙方已選定的仲裁員中產生;
 (四) 雙方當事人未能選定、又未委托本會主任指定首席仲裁員或者一方選定、另一方未選定首席仲裁員,由本會主任指定。

원회의 경우에는 전체 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 내지 5인 또는 1인 내지 10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중복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중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이전과 비교하여 그다지 개선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중재판정 시 다수 의견을 결론으로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중재인의 의견이 중재판정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중재판정은 중재위원회의 의도대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2)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립적 의장중재인 선정 가능성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중재인명부 외에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의하면, 서안중재위원회가 제공하는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안중재위원회 주임의 심사 선정을 거쳐야 한다.⁷⁵⁾ 따라서 당사자가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약정을 한 후에 서안중재위원회 주임의 심사를 받으면 중립적인 중재인 선임이 가능하다.⁷⁶⁾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문언 상으로는 중재인에 의장중재인도 포함된다고 새겨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지정하여 서안중재위원회 주임의 심사 선정을 받으면 의장중재인도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전 2005년 CIETAC 중재규칙 제21조⁷⁷⁾ 제2항은 당사자는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정한 또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지정된 인사는 중재위원회 주임의 확인을 거친 후에 중재인, 수석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을 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이왕의 강제명부제를 현저히 개선한 것이며, 아울러 일부 국내중재기구의 본보기가 되었다.⁷⁸⁾ 그러나 2012년 CIETAC 중재규칙 제24조⁷⁹⁾ 제2항에서는 내용 중에 ‘수석중재인, 단독중재인’ 문언을 삭제하였다. 삭제의 취지가 수석중

75)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1조 제1항.

76) 다만 서안중재위원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77) 2005년 CIETAC 중재규칙 제21조는 다음과 같다: 第二十一條 仲裁員名冊

(一) 當事人從仲裁委員會提供的仲裁員名冊中選定仲裁員。

(二) 當事人約定在仲裁委員會仲裁員名冊之外選定仲裁員的, 當事人選定的或根據當事人之間的協議指定的人士經仲裁委員會主任依法確認后可以擔任仲裁員、首席仲裁員或獨任仲裁員。

78) 宋連斌, 앞의 논문, p.38.

79) 2012년 CIETAC 중재규칙 제24조는 다음과 같다: 第二十四條 仲裁員的選定或指定

(一) 仲裁委員會制定統一适用于仲裁委員會及其分會/中心的仲裁員名冊; 當事人從仲裁委員會制定的仲裁員名冊中選定仲裁員。

(二) 當事人約定在仲裁委員會仲裁員名冊之外選定仲裁員的, 當事人選定的或根據當事人之間的協議指定的人士經仲裁委員會主任依法確認后可以擔任仲裁員。

재인이나 단독중재인의 경우에는 중재인명부 외의 인사를 중재인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면, 서안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장중재인을 중재인명부 외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서안중재위원회에 문의하여 중재계약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서안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재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중재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한국인 법률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중재위원회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3) 다른 중재규칙의 선택을 통한 중립적 의장중재인 선정가능성

그 다음 중재규칙에 대하여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의장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중재규칙을 사용하거나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절차규정에 대해서만 그러한 중재규칙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약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사항 또는 중재에 적용할 규칙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중재기구는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중재위원회이고,⁸⁰⁾ 청도중재위원회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조는 “당사자가 중재절차 사항 또는 중재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그 약정이 집행할 수 없거나 중재지의 강행규정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¹⁾ 서안, 중경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⁸²⁾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제2항은 “당사자가 그 분쟁을 본 중재위원회 또는 분회에 회부하여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두 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절차 사항 또는 중재에 적용하는 중재규칙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고 동시에 본 중재위원회 또는 분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³⁾ 항주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⁸⁴⁾

80)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조;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5조;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81)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조는 다음과 같다: 第二條 本規則的適用 當事人協議將爭議提交本會仲裁的, 適用本規則。當事人就仲裁程序事項或者仲裁適用的規則另有約定的, 從其約定, 但該約定無法執行或者與仲裁地強制性法律規定相抵觸除外。

82)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當事人就仲裁適用的規則另有約定, 或約定對本規則有關內容進行變更的, 從其約定。但與法律、行政法規的強制性規定相抵觸的除外。중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는 다음과 같다: 第三條 本會及本會設立的分支機構對民商事案件的仲裁活動, 適用本規則。當事人另有約定的除外。

83)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二) 當事人協議將其爭議提交本會或者分會仲裁的, 均視為同意按照本規則進行仲裁, 但當事人就仲裁程序事項或者仲裁適用的規則另有約定且經本會或者分會同意的, 可從其約定。

84)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5조는 다음과 같다: 第五條 當事人協議向仲裁委員會申請仲裁的, 即視為同意按

위의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은 섭외중재기구인 CIETAC의 중재규칙 선택 규정과 거의 유사하다.⁸⁵⁾ 북경과 서안중재위원회는 별도의 약정을 따르는데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CIETAC 중재규칙과 거의 유사하며, 광주와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은 각각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별도의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CITETAC의 중재규칙과 차이가 있다.

만약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위의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를 하는 경우에 중립적인 의장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을 사용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이들 중재규칙 내의 의장중재인 선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국투자기업은 제3국의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보다 공정한 중재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면, 제3의 중재인은 이미 지정된 두 사람의 중재인이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이 된다.⁸⁶⁾ ICC 중재규칙에 의하면, 당사자는 의장중재인에 대하여 별도의 선정 절차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되는 제3의 중재인은 중재원에서 임명하며,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제3의 중재인은 반드시 중재규칙 제13조에 따라 중재원이 확인을 받아야 한다.⁸⁷⁾ 의장중재인 선정 방법은 UNCITRAL 중재규칙이 ICC 중재규칙보다 더 명확하고 간편하다.

북경이나 서안중재위원회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거나 이러한 중재규칙상의 의장중재인 선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정이 집행할 수 없거나 중재지의 강행규정과 서로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상의 의장중재인 선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정은 중재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할 수 없는 약정은 아니다. 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중국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 중재법상의 중재인 선정에 관한 절차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특히 중재인 선정 등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당사자 자치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영역이므로 이를 중국에서만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따라서 북경이나 서안중재위원회에서

照本規則進行仲裁。但當事人對仲裁程序另有約定且征得仲裁委員會同意的，則從其約定。

85) CIETAC 중재규칙 제4조 제3항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재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중재규칙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하거나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그 약정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강행규정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상응하는 관리의 직무를 이행한다.(當事人約定將爭議提交仲裁委員會仲裁但對本規則有關內容進行變更或約定適用其他仲裁規則的，從其約定，但其約定無法實施或與仲裁程序適用法強制性規定相抵觸者除外。當事人約定適用其他仲裁規則的，由仲裁委員會履行相應的管理職責。)” 고 규정하고 있다.

86) UNCITRAL 중재규칙 제9조 제1항.

87) ICC 중재규칙 제12조 제12조 제5항.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상의 의장중재인 선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광주와 항주중재위원회를 이용하여 중재를 하는 경우에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거나 이러한 중재규칙상의 의장중재인 선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각각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들 중재위원회의 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것은 대체로 북경이나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약정이 집행할 수 없거나 중재지의 강행규정과 서로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가 동意的 기준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상의 의장중재인 선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동意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무상 지역보호주의 기타 행정적인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한 후에 중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재인은 중재인명부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중국의 국내 중재기구에서는 이 규정을 이유로 중재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한국이나 제3국의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북경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은 중재위원회가 제공하는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⁸⁸⁾, 광주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⁸⁹⁾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는 중재인명부를 두고 있으나⁹⁰⁾ 그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중경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은 반드시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재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⁹¹⁾

중국 중재법에는 중재인명부의 강제적인 사용 개념이 없지만,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자유를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재 실무는 오직 당사자가 중재기구가 제공하는 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명부제는 사실상 강제명부제로 이해되어 왔다.⁹²⁾ 그러나 중재인명부 제도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국제적인 중재실무에서는 그것이 실무상 많이 이용되기는 하지만 당연히 중재인명부 외에서도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중국에서도 서안중재위원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행을 버리고 국제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중재규칙상의 중재인명부에 관한 규정이 중국의 강행규정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으며, 중재위원회에서도 이것

88)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7조.

89)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6조 제4항.

90)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조.

91) 중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7조.

92) 宋連斌, 앞의 논문, p.38.

을 이유로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거나 이러한 중재규칙상의 의장중재인 선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약정을 배척하거나 동의거절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위의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를 하는 경우에 중재절차 사항 또는 중재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 중재위원회에서는 중립적인 의장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을 사용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이들 중재규칙 내의 의장중재인 선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한국인이나 제3국의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제3국의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기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분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서 추기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정한 판정이 필요할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⁹³⁾

(5) 중재 전 재산보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최종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으로부터 손해를 전보 받는 데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 이후에 판정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중재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중재 전 재산보전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⁹⁴⁾

중국 중재법 제28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실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통지」(법발(1997)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중재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이 재정한다.⁹⁵⁾ 국내중재기구의 중재규칙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판정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판정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때, 중재위원회는 그 신청을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송부하고,⁹⁶⁾ 법원에서 재산보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의 태도는 중재합의 당사자는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⁹⁷⁾ 더 나아가서 중재지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국이나,⁹⁸⁾ 마찬가지로 중재절

93) 다만 이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에 있어서 설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분쟁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능하면 설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94) 자세한 것은 윤진기,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p.47 이하 참조.

95) 위의 논문, p.53.

96)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4조;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9조; 청도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6조;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 중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

97) 한국 중재법 제10조.

98) 한국 중재법 제2조 제1항.

차 개시 전에 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독일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다.⁹⁹⁾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그 대부분이 긴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산보전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보전신청을 할 때에는 중재기구가 심리를 한 후에 다시 중재기구가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이 접수, 심사를 한 후에 보전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되면, 보전조치를 청구한 재산은 상대 당사자가 이미 은닉 혹은 이전 할 수 있다.¹⁰⁰⁾¹⁰¹⁾

실제로 섭외중재기구의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재산의 은닉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Randall Peerenboom교수가 1995-1998년까지 CIETAC의 중재판정 집행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 35건(49%)은 집행허용, 37건(51%)은 집행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거부된 37건중 민사소송법상의 거부사유 18건, 재산부족으로 집행불가능 16건(43%), 이유불명 3건으로 나타났는데, 재산부족이유는 중국측이 재산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거나 또는 중국기업이 적법하게 파산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¹⁰²⁾

중국 내에서도 이에 관한 지적이 있다.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는 중재절차 중 중재기구를 통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또 채무자는 재산을 이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전 되는 재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중재법」을 개정 시에 당사자가 중재 전에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¹⁰³⁾

실무에 있어서는 중재 전에 중국 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재조항이 적용되는 계약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동원하여 중국 내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 사전 재산 보전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⁴⁾

99) 독일민사소송법 제1033조에서는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또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법원에 대하여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1조에 중재판정부도 보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민사소송법 제1041조 제2항 내지 제3항 참조. 강병근, “보전조치의 비교법적 검토,” 중재, 2000년 봄호(295호), 대한상사중재원, p.118.

100) 김광수,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제도상의 문제점 및 한국 측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권, 한국무역학회, 2011.6, p.253.

101) 윤진기, 앞의 논문(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p.63.

102) Randall Peerenboo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The China Business Review*, Jan/Feb 2001, Vol.28 No.1, pp.8-11; 정성운, “2012년 CIETAC 중재규칙(개정)과 현행 KCAB 국제중재규칙 비교,” 한중법학회 제86회 정례학술발표회, 2013.3.8., p.15.

103) 劉武俊, 앞의 논문, p.45.

104) 중국 밖에서 중재를 하면서 중국 내 재산 동결을 위하여 실제로 중재조항이 적용되는 계약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동원하여 중국 내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변용재, “쉽고도 까다로운 ‘중재’,” *China Journal*, 2011. 5, p.57.

(6) 소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염려와는 달리 중국의 국내중재기구의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는 생각보다는 잘 보장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국내중재기관의 비독립성에 도 불구하고,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산보전에 관한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 내 국내중재기구에서 공정한 중재판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당사자 자치가 비교적 잘 보장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즉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의 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중재학회와 MOU를 체결하여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의 법률가나 중재전문가를 이러한 중국의 중재기구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하여 당사자 자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하게도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중재위원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규칙의 규정을 활용한 중재인 선정을 통하여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서안중재위원회는 중재인을 중재인명부 외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한국투자기업이 중재인명부에 없는 한국인 중재인을 중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재절차 사항 또는 중재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 중재위원회에서는 중립적인 의장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을 사용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이들 중재규칙 내의 의장중재인 선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한국인이나 제3국의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은 분쟁금액이 큰 경우에는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를 하는 것이 다른 국내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서안중재위원회의 경우 중재인명부 외에서 제3의 중립적인 중재인을 지정하여 중재위원회 주임의 심사 선정을 받으면 의장중재인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은 강제집행 가능성이 섭외중재판정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분쟁금액이 큰 것은 여전히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금액이 적고 지리적 편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중재위원회를 이용하여 중재하면 다른 국내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중재 전 재산보전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중재 전에 중국 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재조항이 적용되는 계약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동원하여 중국 내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 사전 재산 보전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점은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V. 국내중재판정 집행의 용이성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통하여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보장되어야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내중재기구를 통하여 받은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용이성에 대한 문제는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는데 관건적인 요소가 된다. 그 동안 중국 국내중재판정은 섭외중재판정이나 외국중재판정에 비하여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존재해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중재판정의 강제집행 문제가 국내중재기구의 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중재판정 취소제도와 문제점

국내중재판정의 경우 외국중재판정과 달리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¹⁰⁵⁾ 판정의 집행에 뜻이 없는 당사자들은 중국 중재법 제58조¹⁰⁶⁾ 및 해당 중재기구의 중재규칙¹⁰⁷⁾에 근거하여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여 집행을 면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 중국 중재법 제63조 및 민사소송법 제237조¹⁰⁸⁾ 제2항에 근거하여 부집행 신청을 하여 집

105)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第二百三十七條 對依法設立的仲裁機構的裁決, 一方當事人不履行的, 對方當事人可以向有管轄權的人民法院申請執行。受申請的人民法院應當執行。

106) 중국 중재법 제58조는 다음과 같다: 第五十八條 當事人提出證據證明裁決有下列情形之一的, 可以向仲裁委員會所在地的中級人民法院申請撤銷裁決:

(一) 沒有仲裁協議的;
(二) 裁決的事項不屬於仲裁協議的範圍或者仲裁委員會無權仲裁的;
(三) 仲裁庭的組成或者仲裁的程序違反法定程序的;
(四) 裁決所根據的證據是偽造的;
(五) 對方當事人隱瞞了足以影響公正裁決的證據的;
(六) 仲裁員在仲裁該案時有索賄受賄, 徇私舞弊, 枉法裁決行爲的。

人民法院經組成合議庭審查核實裁決有前款規定情形之一的, 應當裁定撤銷。人民法院認定該裁決違背社會公共利益的, 應當裁定撤銷。

107) 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도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있다. 예컨대,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72조; 청도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55조 등이 그것이며, 취소 사유는 중재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108)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는 다음과 같다: 第二百三十七條 對依法設立的仲裁機構的裁決, 一方當事人不履行的, 對方當事人可以向有管轄權的人民法院申請執行。受申請的人民法院應當執行。

被申請人提出證據證明仲裁裁決有下列情形之一的, 經人民法院組成合議庭審查核實, 裁定不予執行:

(一) 當事人在合同中沒有訂有仲裁條款或者事後沒有達成書面仲裁協議的;

행을 면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에 상대방이 스스로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은 이러한 절차에서 모두 잘 방어를 해야 강제집행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는 중국 중재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소재지가 있는 중급인민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법 58조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제적 내용상의 하자까지 심사하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만 심사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섭외중재판정보다 불리하다.

게다가 법률실무자들 역시 중재에서 패한 많은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경우 단심 중국성과 신속성은 상당부분 그 의미를 상실한 상황이다. 결국 중재판정 후에도 그 취소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에서 지루한 법률 공방전을 펼쳐야 하고, 중재판정부의 실제적 판단 부분까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됨으로써 취소신청인의 상대방은 중재판정의 취소가능성을 걱정해야 함은 물론이고, 실령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거나 강제집행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¹⁰⁹⁾

한편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재판정 취소신청 시 비용적인 부담도 없고 집행을 피할 시간도 벌 수 있고, 아울러 중재판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실제적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에 해당 신청제도를 남용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도 많은 사건에서 취소신청을 무분별하게 제기하였다.¹¹⁰⁾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신청 제도는 법원의 취소 결정시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고, 그 심리과정에서도 서면심리만 가능하여 취소신청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제도이다.¹¹¹⁾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수리한 법원이 중재판정부를 통해 다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부에 일정 기한 내 다시 중재를 하라는 통지를 하고, 중재판정 취소절차를 종료시키는 재정을 한다. 만일 중재판정부가 재중재 진행을 거

(二) 裁決的事項不屬於仲裁協議的範圍或者仲裁机构无權仲裁的；

(三) 仲裁庭的組成或者仲裁的程序違反法定程序的；

(四) 裁決所根據的證據是偽造的；

(五) 對方當事人向仲裁机构隱瞞了足以影響公正裁決的證據的；

(六) 仲裁員在仲裁該案時有貪污受賄，徇私舞弊，枉法裁決行爲的。

人民法院認定執行該裁決違背社會公共利益的，裁定不予執行。

裁定書應當送達雙方當事人和仲裁机构。

仲裁裁決被人民法院裁定不予執行的，當事人可以根據雙方達成的書面仲裁協議重新申請仲裁，也可以向人民法院起訴。

109)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31.

110) 위의 논문.

111) 위의 논문, p.532.

절한다면 법원은 중재판정 취소절차를 회복시키는 재정을 하여야 한다.¹¹²⁾ 중재법 제61조는 이러한 재중재의 통지를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도 아니고 인정도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길을 열어 놓았다.¹¹³⁾

재중재 통지 제도는 그 요건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및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규정에 그 ‘일정 기한’이 얼마인지도 정하지 않고, 재중재를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중재를 한 후 재차 중재판정 취소신청이 들어온 경우 그에 대해 다시 재중재를 통지할 수 있는 지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아주 불충분한 제도로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도 악용될 수 있다.¹¹⁴⁾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는 재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재판정부 인민법원의 재중재 통지를 받은 후 재중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재를 진행한다. 다시 중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의견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재위원회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사실을 통지한다. 그 중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중재인이 뇌물을 강요 수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법적인 판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재중재에 동의한 경우에는 중재비용을 다시 수취하지 아니한다.¹¹⁵⁾ 비록 중재비용은 수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재심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재인의 교통비, 숙식비 등의 경비와 시간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은 국내중재판정에서 승소판정을 받더라도 중재판정 취소절차에서 비용과 시간, 강제집행 회피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며, 재중재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 모든 것을 잘 방어해야 강제집행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112) 중국 중재법 제61조, 중재법 제61조는 다음과 같다: 第六十一條 人民法院受理撤銷裁決的申請后, 認為可以由仲裁庭重新仲裁的, 通知仲裁庭在一定期限內重新仲裁, 并裁定中止撤銷程序。仲裁庭拒絕重新仲裁的, 人民法院應當裁定恢復撤銷程序。

113)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34.

114) 위의 논문, pp.534-535.

115) 항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73조, 제73조는 다음과 같다: 第七十三條 仲裁庭收到人民法院重新仲裁的通知后, 認為應予以重新仲裁的, 進行重新仲裁。認為不應重新仲裁的, 須將書面意見提交仲裁委員會, 由仲裁委員會函告人民法院。其中, 存在第七十二條第三項和第六項規定的情形的, 應當組成新的仲裁庭重新仲裁。仲裁庭同意重新仲裁的, 不再收取仲裁費用。

3. 중재판정 부집행 신청 제도와 강제집행의 상대적 어려움

성공적인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상기와 같은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극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상대방의 중재판정 부집행 신청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중재판정 내용이나 판정 과정에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에서 중재판정의 부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경우에 따라 이미 중국 내 중급인민법원에서 중재취소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을 다시 다른 지역의 일반 법원의 합의부에서 재심사하게 되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 후에도 최악의 경우 두 번의 사법적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¹¹⁶⁾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에 규정된 중재판정 부집행 사유는 중국 중재법 제58조에 규정된 취소사유와 동일하다.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더하여 중재판정 부집행 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은 매우 불합리하다.¹¹⁷⁾ 우리나라 중재법도 해석상 중재판정 취소신청과 중재판정 부집행 판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제36조에 중재판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비록 명시적인 부집행 신청 규정은 없으나, 제38조(국내 중재판정)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조제2항의 사유(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취소사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부집행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처럼 취소신청에서 패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대한 취소거절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 판결 단계에서 취소거절 판결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별 다툼 없이 받아들여 질 것이다. 중국에서도 중재판정 취소신청에서 취소거절이 확정되면, 집행거부 신청을 하지 못하게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중재법과 민사소송법¹¹⁸⁾이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은 국내중재판정과涉外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에 관한 실체문제를 심사할 수 있으나,¹¹⁹⁾涉外중재판정의 집행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체문제를 심사하지 않는다.¹²⁰⁾

116)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32 참조.

117) 위의 논문, p.533.

118)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그 후 2007년에 1차 개정된 후, 2012년 8월 31일에 2차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19) 중국 중재법 제63조;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는 각주 99) 참조.

120) 중국 중재법 제71조;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다음과 같다: 第二百七十四條 對中華人民共和國涉外仲裁機構作出的裁決, 被申請人提出證據證明仲裁裁決有下列情形之一的, 經人民法院組成合議庭審查核實, 裁定不予執行:

중재에 관한 중국의 법규범은 ‘국내중재’, ‘섭외중재’, ‘외국(국외)중재’¹²¹⁾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용어의 구별기준은 당해 중재판정을 내린 기구이다.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는 중국의 관련된 규제가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재이고, ‘외국중재’는 중국의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 외국의 특정한 규제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재를 가리킨다.¹²²⁾ 국내중재판정과 섭외중재판정을 외국중재와 구별하는 기준은 중재판정을 내린 기구이지만, 국내중재판정과 섭외중재판정의 구별 기준은 중재판정을 내린 기구가 아니다. 섭외중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법해석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섭외요소가 있는 사건의 중재는 섭외중재로 간주된다.¹²³⁾

따라서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통해서 얻은 중재판정은 국내중재판정에 속하며,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에 관한 실체문제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섭외중재보다 많을 수 있다. 만약 섭외중재기구를 통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은 섭외중재판정에 해당되고, 섭외중재판정의 집행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체문제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률이 국내중재판정보다 높을 수가 있다. 한국투자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낮은 중재판정 집행률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섭외중재와 외국중재의 경우 집행신청을 받은 법원이 집행을 거부하고자 하여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의 상급법원 내지 최고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¹²⁴⁾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될 때 최고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관할 법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¹²⁵⁾ 따라서 이러한 상황도 국내중재기구를 통해서

- (一) 当事人在合同中沒有訂有仲裁條款或者事後沒有達成書面仲裁協議的；
 (二) 被申請人沒有得到指定仲裁員或者進行仲裁程序的通知，或者由于其他不屬於被申請人負責的原因未能陳述意見的；
 (三) 仲裁庭的組成或者仲裁的程序與仲裁規則不符的；
 (四) 裁決的事項不屬於仲裁協議的範圍或者仲裁機構無權仲裁的。
 人民法院認定執行該裁決違背社會公共利益的，裁定不予執行。

121) 예컨대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는 다음과 같다: 第二百八十三條 國外仲裁機構的裁決，需要中華人民共和國人民法院承認和執行的，應當由當事人直接向被執行人住所地或者其財產所在地的中級人民法院申請，人民法院應當依照中華人民共和國締結或者參加的國際條約，或者按照互惠原則辦理。

122) 蘇曉凌, 앞의 논문, p.500.

123) 위의 논문, pp.500-501 각주 28.

124) 1995년 8월 28일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 사항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에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국 섭외중재기구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외국 중재기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중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한 사유 중의 하나를 구비하고 있거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집행의 제정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절 전에 반드시 당해 관할지역의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고급인민법원이 부집행 또는 승인 및 집행거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심사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부집행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절을 재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李井杓, “中國涉外經濟貿易仲裁協議和裁決之法理研究,” 中國人民大學博士學位論文, 1998. 5, p.150 참조.

125) 蘇曉凌, 앞의 논문, p.501 각주 28.

중재를 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한 중국 연구자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여, 후자에 일정한 우대대우를 하는 것은 논란이 없는 사실이다. 중국 중재법은 비록 역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고 있지만, 중재감독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커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¹²⁶⁾ 고 한다. 국내중재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인용할 수 있는 이유는 중재절차, 실체 및 중재인의 행위 등 각 분야에 이르고, 중재판정의 중국성은 엄중한 도전을 받게 된다. 국내중재판정과 국제중재판정은 사법감독에 있어서의 거대한 차별은 합리적인 기초가 없어 보인다.¹²⁷⁾

중국 내 중재판정과 외국의 중재판정을 그 승인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1995년의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은 두 가지 중재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국 내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부집행하는 경우에도 상급법원들에 사전에 보고를 하게 하여 하급법원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¹²⁸⁾

중재판정 부집행 신청 제도는 지방법원의 적지 않은 사례에서 지방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집행 신청 제도 역시 그 재정에 대해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고, 특히 해당 사건이 강제집행 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되기에 지방보호주의, 특히 지방에서 중요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지방의 이익 관점에서 지방행정 기관의 간섭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¹²⁹⁾

4. 사회공공이익을 이유로 한 집행거절의 가능성

중국의 국내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이유로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3항은 “인민법원은 당해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집행 재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중재판정도 당연히 사회공공이익의 심사대상이 된다.

공공질서(public policy)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서양속(order public), 선량한 풍속(boni mores)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질서의 개념은 통상 두 가지 기본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도덕형으로 일국의 선량풍속, 도덕준칙, 정의관념 등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념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이익형으로 일국 또는 사회의 중대이익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¹³⁰⁾

126) 宋連斌, 앞의 논문, p.112.

127) 위의 논문, p.111.

128)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40.

129) 위의 논문, p.533.

중국은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공공이익(社會公共利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³¹⁾ 그러나 중국 학계 및 판례는 중국의 법률에 규정된 사회공공이익은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과 명칭은 상이하고 의미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내용 및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사회공공이익을 중국의 중대한 근본이익, 기본정책, 도덕의 기본관념, 법률의 기본원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¹³²⁾ 그러나 중국이 각 법률에 공서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각 사건에서 그 의미를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¹³³⁾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서(public policy) 개념이므로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그냥 공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상 공서위반은 당사자들이 자주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서위반을 이유로 집행이 거부된 유일한 사건은 [2008] 民四他字第11号 사건이다.¹³⁴⁾ 외국중재판정과 관련된 공서조항의 운용에 있어서 중국은 주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그 외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현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¹³⁵⁾

중국 중재법 제58조 제3항과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3항에 의하면 인민법원은 문제의 국내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중재판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의 한 연구는 중국에서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이 취소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¹³⁶⁾ 그러나 최근의 다른 연구는 중국에서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고, 공서를 단순히 국내의 공공질서나 지방정부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해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¹³⁷⁾

130) 하현수,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1.12, p.117.

131) 이는 “외국법률 또는 국제판례의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1986년 중국 민법통칙 제150조의 규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밖에 중국은 계약법 제7조, 물권법 제42조, 외자기업법 제5조 등에서도 사회공공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외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구 제266조) 및 국내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한 민사소송법 제237조에도 사회공공이익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132) 하현수, 앞의 논문, pp.121-122.

133) 신지연·이정표, “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2, p.34.

134) 蘇曉凌, 앞의 논문, p.515.

135) 신지연·이정표, 앞의 논문(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p.47.

136) 신창섭, “우리나라와 중국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2006.8, p.84.

137)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공공이익의 위배”인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중재법과 뉴욕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뉴욕협약의 “사회공공이익의 위배” 조항을 근거로 중재판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중국은 자주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회공공이익의 개념과 적용기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왜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지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으며 단지 추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외국중재판정에 대해서는 공서조항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만, 국내중재 판정에서 중국이 공서조항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부집행할 가능성은 외국중재판정에 비하여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국내중재판정의 집행 현황

중국에서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강소성(江蘇省)의 어떤 대도시 법원이 처리하는 63개의 국내중재판정의 집행 안건 중에서 2개의 중재판정은 집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다른 35개의 판정의 집행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¹³⁸⁾

그 동안 국내에서 중국의 중재판정 집행과 관련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해서만 주로 소개하고, 그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하여 염려하여 왔다. 그러나 따라서 국내당사자도 동일하게 그들의 중재 중의 권익이 손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사전 보고’ 제도는 섭외중재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명백히 국내중재당사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것은 중국에서 지방보호주의는 외국당사자에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국내당사자의 권익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량의 국내 ‘외지에서 온’ 당사자가 중재 중의 합법적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¹³⁹⁾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국 최고법원이 2007년 중국 17개 성(省)의 법원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리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사건을 조사한 결과 집행거부사건은 조사된 총 사건수의 6.76%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다.¹⁴⁰⁾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다른 자료들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

중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는 2000년 Peerenboom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외국중재판정 및 CIETAC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사례 89건 중 불확실한 사례를 빼고 72건을 분석하였는데, 외국중재판정의

“국가의 경제이익과 대외무역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다른 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였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다. 이와 같이 중국 법관들은 사회공공이익에 대하여 중국의 천연자원의 파괴, 심각한 환경오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침해, 중국 도덕관념의 타락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만약 판결의 결과가 지방정부의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확대해석 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에서 “사회공공이익”이 국제규범으로서의 public policy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고 단순히 국내의 공공질서나 지방정부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오원석·이경화, 앞의 논문, pp.170-171.

138) 顧維退, 앞의 논문, p.16.

139) 위의 논문.

140) 楊弘磊, “人民法院涉外仲裁司法審查情況調研報告,” 《武大國際法評論》, 第9卷, 304頁. 蘇曉凌, 앞의 논문, p.517에서 재인용.

집행비율은 52%, CIETAC의 중재판정의 집행비율은 47%였다. 중재액의 50-75% 정도만 집행되었으며, 검토대상 사례의 34%에서는 40% 정도만 집행되었다.¹⁴¹⁾

실제로 중국에서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 통계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음이 지적되고 있다.¹⁴²⁾ 외국중재판정이나 섭외적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은 의무이행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중급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중국에는 약 400개의 중급법원이 있는데다 집행을 구하는 자가 중재기구나 법원에 신청을 통지하거나 중급법원이 인민법원에 신청사실을 보고하는 체제도 아직 완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정부나 중재기가 공인된 통계자료의 발표를 통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¹⁴³⁾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중급인민법원이 아닌 일반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고,¹⁴⁴⁾ 일반 인민법원원의 경우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 집행통계를 계획적으로 작성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중재판정 부집행 숫자는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중재판정은 실제적 심사가 가능하고 상급법원에 보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섭외중재판정이나 외국중재판정보다는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6.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의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¹⁴⁵⁾ 이 조약에는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상호간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문제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은 아직 민사판결의 상호 승인에 관한 조약의 부존재로 인하여 중국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판결을 신청할 수는 없다.¹⁴⁶⁾ 중국에서 중국 당사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새로 소송을 제기하고

141)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12, p.30.

142) 예컨대, Michael Moser, “China and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JCL Arb, Vol.61 No.2, 1995, pp.46-50.

143) 김선정, 앞의 논문, p.29.

144) 중국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중국 중재법 제62조.

14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 조약은 2005년 3월 28일 이빈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통상부 정해웅 조약국장과 “중한민사상사사법 공조 조약”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여, 2005년 4월 27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http://www.mofa.go.kr/incboard/faimsif/treaty_popup.jsp?ITEM_ID=0268F74FD44AC56549256D5E000D9E09&ITEM_PARENT_ID=CB2BBC4C40377BF049256D5E000D6B52에서 볼 수 있다.

146)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판결 당사국과 상호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중간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국 판결의 집행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중국인이 한국기업에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기업이 중국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중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위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에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항이 있다.¹⁴⁷⁾ 이 조항에 의하면, 한중 양국은 뉴욕협약에 따라¹⁴⁸⁾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뉴욕협약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중국의 거래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단 당해 중재를 중국 영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재기구를 선택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중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해 중재에서 승소판정을 받은 중국 당사자가 한국에 있는 한국투자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투자기업이 중국 거래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거나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은 한국투자기업의 분쟁해결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기업이 중재절차를 거쳐 승소판정을 받았더라도 만약에 중국의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면 한국의 투자기업은 한중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을 원용하지 못하고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일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된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중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되거나 집행된 사례는 있으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승인되거나 집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알고 있다.” 는 자료가 있으나(변웅재, 앞의 글, 56.) 신분관계와 같은 비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과는 달리,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호보증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무상 본문과 같이 중국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판결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새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47)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제25조. 이 조약 제2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25 조(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각 당사국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한다. 이 조약의 규정들은, 위 협약에 저촉되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48) 한국은 1973년 2월 8일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동년 5월 9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1986년 12월 2일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1987년 4월 22일에 중국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중국 내의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¹⁴⁹⁾

7. 소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 중재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에는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중재기구의 활용여부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중국인 당사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가 아니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소송은 불가능하며 결국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재판정의 거절 이유가 되는 지방보호주의나 지방이익의 관점에서 지방행정기관의 간섭에 노출되는 사정이 있는 분쟁은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패소판결로 결론나기 쉽다. 그러나 국내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정부가 공정하게 구성된다면 공정한 판정으로 승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중재판정의 집행과정에서 위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승소한 중재판정이 불합리한 이유로 강제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중국 중재제도의 신뢰성 및 향후 거래당사자들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상식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 해당 뉴스는 전 세계의 법률 실무자들 사이에 공유되며 그들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법률적 또는 COUNTRY 리스크로 고지되며, 국제적인 법률사무소들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에서 많이 소개되고 분석된다.¹⁵⁰⁾ 따라서 향후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단은 점차 신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분쟁의 처리결과를 한국중재학회의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불합리한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여 대외적으로 이를 공개하게 되면 법원의 비합리적인 판단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절반 정도가 중재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이행비용이 높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는 분쟁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149) 다만 앞으로 중국 법원의 태도가 바뀌어 내국 당사자 간의 분쟁이 섭외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만약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제기된 경우에 그 판정을 집행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50)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41.

소송보다는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한 중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쟁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거리가 멀고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여전히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집행가능성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국내중재기구에서도 당사자 자치를 이용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분쟁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섭외중재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중재기구에서 중재를 하는 실익이 있으며, 이것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분쟁이 발생하여도 소송을 하여도 신뢰할 수 없고 중재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해결자체를 포기하는 분쟁사례가 많다.¹⁵¹⁾ 이 경우에는 국내중재기구라도 공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안중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정을 받을 확률이 다른 국내중재기구보다 높다.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소액거래가 많고 분쟁이 발생하여도 그냥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국내중재기구는 중요한 분쟁해결 통로가 될 수 있다.

V. 기타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중재조정제도

중국의 국내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은 대부분 중재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¹⁵²⁾ ‘중재조정’이란 중재판정부가 중재심리 중, 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조정제의를 하거나 당사자들의 조정요청을 받아 판정부에서 직접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조정이 성립하면 판 정부는 조정합의에 근거하여 조정조서나 판정문을 작성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판정부에서 계속하여 심리 및 판정한다. 이러한 중재조정은 중국 중재법에 근거하고 있다.¹⁵³⁾

151) 2013년 필자가 항주상회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파악한 현지 한국기업인들의 고충이다.

152) 북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9조; 한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59조; 서안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36조; 청도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4조;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46조; 중경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59조.

153) 중국 중재법 제51조, 제52조. 중국 중재법 제51조는 다음과 같다: 第五十一條 仲裁庭在作出裁決前, 可以先行調解。當事人自願調解的, 仲裁庭應當調解。調解不成的, 應當及時作出裁決。調解達成協議的, 仲裁庭應當制作調解書或者根據協議的結果制作裁決書。調解書與裁決書具有同等法律效力。중국 중재법 제52조는 다음과 같다: 第五十二條 調解書應當寫明仲裁請求和當事人協議的結果。調解書由仲裁員簽名, 加蓋仲裁委員會印章,

북경중재위원회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중재접수 건수 중 50% 가까이가 이 방식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¹⁵⁴⁾ 현재는 CIETAC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부분 중재기구들이 중재조정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재조정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중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¹⁵⁵⁾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재와 조정의 결합 방식으로 얻은 결론은 일반 중재나 소송에 비하여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이행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중재판정문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선택했고 그 진행 절차를 직접 결정했으며 합의 과정에 모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조정결과에 대하여 친숙함을 느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으며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¹⁵⁶⁾

중재조정제에 대한 중국의 최근의 경향과 당사자들의 이행 비율을 고려할 때, 중재조정제도는 한국의 중국투자기업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적어도 절반 정도는 중재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중재판정의 집행문제에 대한 염려를 조금이라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온라인중재

정보통신기술이 사회활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에는 온라인 중재가 행하여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들이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온라인 중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유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送達雙方當事人。調解書經雙方當事人簽收後，即發生法律效力。在調解書簽收前當事人返回的，仲裁庭應當及時作出裁決。

- 154) 북경중재위원회 (<http://www.bjac.org.cn/introduce/report.html>); 오원석·이경화, 앞의 논문, p.171. 중국의 중재조정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위의 논문, p.171면 이하 참조.
- 155) 2004년 중국공산당은 사회발전전략으로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제기했고,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분쟁, 즉 민사분쟁, 경제분쟁, 행정분쟁 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조정(大調解)’의 시대를 열었다. 또한 2011년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한 16개 유관기관은 함께 「분쟁해결방식으로써 조정의 활용을 추진할 것에 관한 의견」(關於深入推進矛盾糾紛大調解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하여 ‘중재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중재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중재인을 양성하고 중재인의 책임과 중재절차를 중재조정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중재기구들은 모두 ‘중재조정’방식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안중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중재사례를 보면 절반 이상이 중재조정방식으로 해결된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가 선정된 이유는 “대조정”의 정신과 중재기구의 가치관인 “우선조정”의 정신을 실현했고 중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단순 중재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례들을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재조정제도는 현대 중국의 발전전략에도 부합하여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논문, p.176.
- 156) 오원석·이경화, “중국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 제도와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3.8, p.102.

현재 중국의 국내중재기구 중에서 온라인 중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광주중재위원회이다.¹⁵⁷⁾ 온라인 중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이를 전통적인 중재절차의 일부 혹은 전부가 온라인방식으로 대체된 형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광주중재위원회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인터넷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 간의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온라인상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통지하는 내용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⁸⁾

광주중재위원회는 상사중재에 대한 온라인중재규칙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기존의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광주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당사자는 광주중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중재 사이트인 ‘中國商事仲裁網(www.ccarb.org)’를 통해 온라인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요금분쟁사건에 한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중재 규칙을 두고 있다.¹⁵⁹⁾

광주중재위원회는 2007년부터 상사중재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진행하는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소개되어 왔던 온라인분쟁해결이 별도의 독립된 ODR 제공자를 통해 진행되었다면, 광주중재위원회는 자신의 중재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중재절차만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온라인중재를 위한 별도의 중재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분쟁의 경우 광주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합의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온라인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¹⁶⁰⁾

중재위원회에서 접수결정이 나면 중재비용을 청구하고,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직접 중재

157) 광주중재위원회는 CIETAC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온라인 중재를 시도한 중재기구이다. CIETAC에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는 도메인네임분쟁사건만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사중재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광저우중재위원회의 경우, 2007년부터 온라인으로 상사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중재분야에 있어서는 CIETAC보다 한 발 앞서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경자·최성일, 앞의 논문, 219. 중국에서의 온라인분쟁해결은 일반적으로 4개의 분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중국재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온라인분쟁해결센터가 주로 도메인명 분쟁, 일반주소분쟁, 전자상거래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 1일에 CIETAC의 온라인 중재규칙이 발효되어 B2B전자상거래분쟁에 적용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전자상거래법률망(E-commerce Laws Nets)과 Beijing Deofar Consulting Co. Ltd가 설립한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er가 정보교환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셋째, 내부고충메카니즘(Internal Complaint Mechanism)은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의 제공업자에 의해 설치된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불평과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넷째, 전자청원(online petitions)은 중국전자상회, 북경전자상무협회, 상해전자상무협회와 같은 많은 비영리기구에 의해 채용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획기적인 시도가 바로 CIETAC의 온라인중재규칙의 제정과 도입이다. 이 온라인중재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총 55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밀하게 작성된 규칙이라 볼 수 있다. 최석범,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8, p.48.

158) 차경자·최성일, 앞의 논문, p.219.

159) 위의 논문, p.220.

160) 위의 논문, p.234.

위원회를 방문하여 중재비용과 온라인으로 제출한 원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인의 직접방문은 이때가 유일하다. 중재위원회는 온라인제출서류와의 대조작업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일 이내에 온라인중재 절차개시를 통지한다.¹⁶¹⁾

광주중재위원회의 온라인 중재제도를 한국투자기업이 이용한다면, 광주중재위원회의 온라인 중재 방식은 오프라인 중재와 다름없이 진행할 수 있고, 섭외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사분쟁도 충분히 온라인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온라인 중재는 이동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온라인 중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은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광주중재위원회에서 오프라인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중재규칙의 선택과 중재인선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가 보다 넓게 인정되는 서안중재위원회에 비하여 덜 유리할 수 있다. 만약에 광주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이 서안과 같이 중재인선정에 당사자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어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광주중재위원회 온라인 중재시스템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이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 중재를 위하여 이동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온라인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 중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당사자 간에도 용이하게 중재를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만약 공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장점을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오프라인 중재심리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온라인 심리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것이다. 중재인과 신청인 피신청인 간의 면대면 대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에 서안중재위원회에서 온라인중재를 실시하면 폭넓은 당사자 자치로 인하여 공정한 판정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 이용을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중재위원회 온라인 중재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소규모 분쟁에서 시험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중재비용 및 기타 사항

중국의 대표적인 상사중재기구로 CIETAC가 있고 기타 각 도시별로 설치된 국내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을 비교해보면 CIETAC가 약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므로 중재기구 선

161) 위의 논문, p.227.

택 시 비용적 측면을 중시한다면 국내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¹⁶²⁾

중국 내에서의 중재 시 드는 비용을 중국내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드는 비용과 비교한다면(법원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드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CIETAC의 경우 법원 비용보다는 비싸며, 지방 국내중재위원회의 경우 법원 비용보다는 약간 저렴하다. 중재의 경우 중재위원회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의 출장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 그러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¹⁶³⁾ 국외 중재인을 초빙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교통비와 숙박 등 체류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국 내 중재의 경우 그것이 CIETAC에서 진행되는 지방 중재원에서 진행되는 대략적으로 8-1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의 중재절차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며, 특히 중국 법원 내에서의 소송절차와 비교한다면 시간적 경제성 측면에서 확실히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¹⁶⁴⁾

VI.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장차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중재기구를 한국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당사자 자치가 잘 보장되고 있는 중재기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투자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는涉外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의 법적지위에 있어서, 투자기업들은 법률적으로 중국의 내국기업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涉外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한 내국분쟁에 해당하고, 중재기구의 선택에 있어서는 국내중재기구나涉外중재기구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분쟁의 가액이나 상황

162) 강대섭·서성호, 앞의 논문, p.519.

163) 위의 논문, p.520.

164) 위의 논문.

이 섭외중재기구를 선택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중재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중국 국내중재기구는 여전히 독립성과 민간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중재판정의 공정성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진출 기업들은 최소한의 공정한 중재판정을 얻기 위한 다른 방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중재위원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규칙의 규정을 활용한 중재인 선정을 통하여 공정한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서안중재위원회는 중재인을 중재인명부 외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한국투자기업이 한국인 중재인을 중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넷째, 중국 내 국내중재기구에서 공정한 중재판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당사자 자치를 비교적 잘 보장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즉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중재학회 간에 MOU를 체결하여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의 법률가나 중재전문가를 이러한 중국의 중재기구의 중재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중재절차 사항 또는 중재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 중재위원회에서는 독립적인 의장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을 사용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이들 중재규칙 내의 의장중재인 선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한국인이나 제3국의 독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은 북경, 서안, 중경, 광주, 항주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를 하는 것이 다른 곳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서안중재위원회의 경우 중재인명부 외에서 제3의 독립적인 중재인을 지정하여 중재위원회 주임의 심사 선정을 받으면 의장중재인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에서는 중재 전 재산보전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중재 전에 중국 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재조항이 적용되는 계약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동원하여 중국 내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 사전 재산 보전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곱째,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실제문제를 심사하여 부집행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섭외중재판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을 수 있으며, 섭외중재판정과는 달리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될 때 최고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관할 법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투자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낮은 중재판정 집행률

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중국에서 지금까지 섭외중재판정에 대한 공서조항에 대한 운용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중재 판정에서 중국이 공서조항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부집행할 가능성은 섭외중재판정이나 외국중재판정의 경우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아홉째, 한중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도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이 중국 내의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국 국내중재기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열 번째, 중재조정에 대한 중국의 최근의 경향과 당사자들의 이행 비율을 고려할 때, 중재조정제도는 한국의 중국투자기업이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적어도 절반 정도는 중재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 중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며, 특히 원거리에 있는 당사자 간에도 용이하게 중재를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만약에 서안중재위원회에서 온라인중재를 실시하면 폭넓은 당사자 자치로 인하여 공정한 판정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 이용을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중재위원회 온라인 중재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소규모 분쟁에서 시험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대섭·서성호, “중국내 중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재 실무의 관점에서 -,” 「안암법학」 44권, 안암법학회, 2014.
- 강병근, “보전조치의 비교법적 검토,” 중재, 2000년 봄호(29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 김광수, “중국에서의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제도상의 문제점 및 한국 측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1.
-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 劉瑞·張后樂, “한-중 수교 30주년 양국 무역 총액 1조 달러 돌파의 조건과 가능성,”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국에서 살아본 중국학자가 보는 한국, 한국고등교육재단, 2012.

- 변용재, “쉽고도 까다로운 ‘중재’,” *China Journal*, 2011.
- 蘇曉凌,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신지연·이정표, “중국 중재당사자의 외국중재기관 선택에 관한 법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_____, _____, “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신창섭, “우리나라와 중국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 오원석·김태경, “중국상사중재의 사법감독 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 _____. 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지, 2014.
- _____. 이경화, “중국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 제도와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3.
- 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 _____,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중재연구」 제16권 제3, 한국중재학회, 2006.
- _____, “UNCITRAL 모델중재법과 중국 중재법의 비교,” 「경남법학」 제14권,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2.
- _____,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 정성운, “2012년 CIETAC 중재규칙(개정)과 현행 KCAB 국제중재규칙 비교,” 제86회 정례학술발표회, 한중법학회, 2013.
- 차경자·최성일, “중국 광저우(廣州)중재위원회의 온라인중재 운용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 최석범, “중국 온라인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 하현수,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1.
- 顧維遐, “我們信賴仲裁嗎? — 關於中國仲裁研究的英文文獻綜述,” 北京仲裁 第72輯, 2010.
- 羅楚湘, “仲裁行政化及其克服,” 江西社會科學 2012년 第3期, 2012.
- 劉武俊, “中國仲裁制度的實証研究 — 中國仲裁制度的現狀分析及完善對策,” 鄭州經濟管理干部學院學報 第22卷 第1期, 2007.

- 李健, “外國仲裁机构在中國內地仲裁不可行,” 法律快車 > 法律知識 > 仲裁法 > 仲裁論文 > 正文, 2010-12-23(2014.11.8. 검색) <http://www.lawtime.cn/info/zhongcai/zclw/2010122347461.html>
- 宋連斌, “《仲裁法》實施后中國仲裁制度的新發展,” 北京仲裁 第73輯, 2010.
- 宋連斌, “論中國仲裁監督机制及其完善,” 法制與社會發展 2003년 第2期, 2003.
- 楊弘磊, “人民法院涉外仲裁司法審查情況調研報告,” 武大國際法評論, 第9卷 第1期, 2009.
- 于洋·田知密, “論仲裁制度的特点及其在中國的發展,” 社科縱橫 第22卷 第9期, 2007.
- 李井杓, “中國涉外經濟貿易仲裁協議和裁決之法理研究,” 中國人民大學 博士學位 論文, 1998.
- 張小建, “中國仲裁協會基本問題研究——兼論我國《仲裁法》有關條款的修改,” 仲裁研究 第8輯, 2006.
- 張艾清, “我國商事仲裁制度去‘行政化’研究,” 當代法學論壇, 2011年 第4輯, 2011.
- 周江, “也談仲裁机构的民間性,” 北京仲裁 第62輯, 2007.
- 催學杰·何云, “案例評析：論對涉及違反管理性強制性規範的合同所作的外國仲裁裁決的承認和執行-利夫糖果（上海）有限公司申請承認和執行新加坡國際仲裁中心仲裁裁決案評析,” 北京仲裁 第72輯, 2010.
- Michael Moser, “China and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JCL Arb, Vol.61 No.2, 1995.
- Randall Peerenboo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The China Business Review, Vol.28 No.1, Jan/Feb 2001.
- “한국의 중국 투자액, 7년 만에 일본 넘어서,” 「한국경제」, 2014.07.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3018428&intype=1>.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정보공개->통계정보->해외투자통계->통계조회->주투자자규모별
<http://211.171.208.92/odisas.html> (2014.8.5. 검색).
- “宁波法院裁定承認和執行ICC在北京作出的仲裁裁,” 110 法律諮詢网 首頁 > 經濟仲裁 > 經濟仲裁動態 > www.110.com 2010-07-21 14:48(2014.11.8. 검색)
<http://www.110.com/falv/jingjizhongcai/jjzcdongtai/2010/0721/151595.html>
- 趙秀文, “從旭普林公司案看我國法院對國際商事仲裁的監督,” 2010-2-6 15:36:16(2014.11.8. 검색)
<http://www.qiqi8.cn/article/1/10/2010/20100206118722.html>
- 北京仲裁委員會, www.bjac.org.cn/
- 廣州仲裁委員會, www.gzac.org/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www.cietac.org/
- 重慶仲裁委員會, www.cqac.org.cn/
- 西安仲裁委員會, www.xaac.org/ 全國第一批組建的七個試點机构之一。
- 杭州仲裁委員會, www.hzac.gov.cn/
- 青島仲裁委員會, <http://www.qdac.org/>

ABSTRACT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Korean Invested Companies

Jin-Ki Yoon

This study is about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by Korean invested companies. Generally,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However, because parties seeking an arbitration award have ways to get neutrality from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hat guarantee party autonomy, these Korean companies can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o resolve disputes in China.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ollowing.

First, becaus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re legally in the same position as Chinese companies, unless foreign-related factors intervene, when disputes occur with Chi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disputes correspond to internal dispute, and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ese Korean companies must choose either a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stitution.

Second, most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till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which can influence the fairness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should think about alternative ways to get a minimum impartiality in arbitration cases.

Third, the parties are allowed to choose arbitration rules freely in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s. Therefore, in arbitration cases, the parties can get impartiality by choosing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rules which they agree on, or by choosing partially modified arbitration rules of those arbitration commissions.

Fourth, in order to get an impartial arbitration award from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China, it is important for Korean lawyers or arbitration experts -- fluent in Chinese -- to be registered in the List of Arbitrator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way of signing a MOU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r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and arbitration commissions such as those of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which comparatively do guarantee

party autonomy.

Fifth, because application of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s not approved in China, in practice, in order to preserve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t is best to file another suit in China based on other legal issue (e.g., tort) independent from the contract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pplied to.

Sixth, in arbitration commissions which allow different agreement regarding arbitration procedures or arbitration rules, it is possible to choose a neutral arbitrator from a third country as a presiding arbitrator via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Seventh, in the case of Chinese internal arbitral award, because the court reviews the substantive matters to decide the refusal of compulsory execution, the execution rate could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foreign-related cases. Therefore, wh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y should endure low rate of execution.

Eighth, considering the operational experiences of public policy 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wards so far, in case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award,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or the possibility to refuse to execute the award due to public policy is thought to be higher than tha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inth, even though a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as been sign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 includes a provision on acknowledgemen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wh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through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treaty would not be a big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because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nd the party in China are not subject to the treaty.

Tenth, considering recent tendency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n China and the voluntary execution rate of the parties, the system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s expected to affect as a positive factor the Korean companies that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Finally, when using online arbitration, arbitration fees can be reduced, and if the arbitration commissions guaranteeing party autonomy have online arbitrat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getting impartial arbitration award through them is higher. Therefore, the use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is recommended.

Key Words : Arbitration, Commercial Arbitration, Presiding Arbitrator, Arbitration Commission, List of Arbitrators, Preservation of Property, The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vestment in China, Trans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